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김 명 옥 인

2016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규칙 제 2016-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사·처리를”을 “심사를”로 하고 “규정하는 것을”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수 있다.

②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청원인의 성명, 주소,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 접수년월일 등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  
부할 수 있다.

④ 청원이 회부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부일로  
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  
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  
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제1호 중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국가시책”을 “국가 또는 구의 시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처리하는 것이”를 “처리함”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1조 중 “미치지”를 “영향을 미치지”로 한다.

제1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청원인란과 소개의원란 각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심사를 -----규 정함을 -----.</p>
<p>제2조(청원소개서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p>
<p>②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불수리사항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지방</p>	<p>제3조(불수리사항 통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p>

자치법」 제74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하  
거나, 특히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  
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  
성·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  
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

다) -----  
-----  
-----.

제4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상임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  
하 “특별위원회”라 한다) -----  
-----.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  
청원서를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  
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청원인의 성명, 주소, 청원의 요지, 소

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개위원의 성명, 접수년월일 등을 기재 한다.

③ -----구성된-----  
-----  
-----.

④ 청원이 회부된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부 일로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  
-----  
-----.

제6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

제7조(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강남구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생략)

3. 청원의 취지가 국가지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8조(심사보고) ① (생략)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

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

2. (현행과 같음)

3. ----- 국가 또는 구의 시책에 -----

제8조(심사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와-----

-----붙-----



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9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 5. (생략)

제10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1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

원-----.

1. -----처리함이-----

2. ----- 처리함이 -----

제9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위원회로 회부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1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

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  
원의 효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영향을 미치지 -----.

제11조의2(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  
는 의원이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  
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에 따른다.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소 개 의 원	(인)			
소 개 년 월 일				
<u>소 개 의 견</u>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인)	<u>생년월일</u>
소 개 의 원	(인)		
소 개 년 월 일		청 원 철 회 일 자	
<u>철 회 요 구 사 유</u>			

<신설>

[별지 제3호서식]

청 원 서

○ 청 원 건 명 : ( )에 관한 청원

○ 청원의 취지

20 년 월 일

위 청원인

주 소:

성 명: (인) 외 명

연 락 처:

소개의원: (인)

첨부 : 연서자 명부 1부

( \_\_\_\_\_ )에 관한 청원 연서자 명부

연번	성명	주소	날인(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청원서 기재요령

1. 청원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소개의견서 1부,
- 청원서 1부
- 관련참고자료(필요시) 1부
- 청원인 서명날인부 1부 (청원인이 2인 이상의 다수일 경우)

2. 서식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 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나.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건명, 청원취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서명(날인)하여 주십시오.

<신설>

[별지 제4호서식]

청 원 요 지 서

접 수 번 호		접수년월일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소개의원		소속 위원회	
건 명			
소관 위원회			
<u>요 지</u>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 이유

청원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6조의2).
- 나.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안 별지 제1 호서식 ~ 안 별지 제2호서식).
- 다. 청원서 및 청원요지서를 별지 서식으로 추가(안 별지 제3호 서식 ~ 안 별지 제4호 서식).